

첨단단지 '월평초·중' 통합학교 들어서나

도교육청, 병설유치원 포함 38학급 규모 신설 계획 발표 내년 초 JDC서 학교 용지 받으면 4월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8년 개교 목표... "아라초 과밀 해소, 통학 불편 해결"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중 통합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28일 통합학교인 가정 '월평초·중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통합학교 설립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초등학교만 새로 세울 계획이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을 감안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로 방향을 바꿨다. 그동안 도내에서 작은 학교 통폐합

을 통해 초·중학교가 운영된 적은 있지만 신설 단계에서 통합학교로 준비되는 사례는 '월평초·중'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학교 부지는 제주도 월평동 717-2번지로 지난 11월 교육환경평가를 마쳤다. 해당 부지는 총 2만1100㎡ 규모로 건축면적 1만4415㎡에 유·초·중 학교 총 38학급(특수학급 3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50억으로 추산된다. 도교육청은 첨단단지를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내년 초 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받으면 2

월 중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4월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월평초·중'이 생기면 아라동 지역의 유치원 배치 시설 부족,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과 중학생의 통학 불편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첨단단지 내 초등학교들이 직선거리로 약 2.5km 떨어진 영평초 등에 배치되고 있는데 도로 여건상 도보 통학이 불가능하고 안전에도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 동지역 북부에 전체 16개 중학교 중 15교가 몰려있어서 앞으로 초·중 통합학교가 들어서면 아라도시개발 등에 따른 중장기 학생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 11월 기준 첨단단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11세 학생 인구는 252명, 만 0~5세는 325명

으로 나타났다.

김명기 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은 "첨단단지 2단지 추가 개발도 예정된 사항이어서 초·중 통합학교를 통해 도내 최대 과대·과밀학교 중 하나인 아라초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초등학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 신설 시 영평초 등 인근 학교 소규모화 우려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과장은 "'월평초·중'은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350억의 학교 설립 기금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중앙투자심사 적격 승인을 받으면 2028년 개교가 가능한 만큼 학교 신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일반재판 4·3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지검 "대상자 확대해야 정의·형평에 부합" 대상자 1500여명 추정... 어제 1차로 10명 청구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4·3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에 28일 1차 직권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왔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으로 군법회의 수형인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갈

은 지적을 수용해 지난 8월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일반재판 4·3수형인을 156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중 선고일을 기준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 의사가 확인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4·3특별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다"며 "4·3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겨울바다에서 먹이 찾는 오리들 27일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 바다에서 오리들이 물속에 머리를 넣고 먹이를 찾고 있다.

이상민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1000명대 육박

제주 지난 27일 하루 995명 도내 격리 치료환자 3965명

제주지역에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하루 동안 9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622명이 확진되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6만4537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4566명이 확진됐으며 일평균 확진자 수는 652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주 대비 385명이 증가한 수치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21일 714명에 이어 22일 760명, 23일 591명, 24일 560명, 25일 401명, 26일 545명 등이다. 12월 들어 확산세는 올해 하반기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8월 확진자 수는 5만1151명으로 유행이 이어지다 지난 9월 1만1902명으로 줄었고, 10월에는 5444명으로 주춤했다. 이어 11월 9764명, 이날

들어선 이날 기준 1만4776명을 나타내고 있다.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 환자는 3965명이며 이중 395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89)씨가 지난 25일, 지난 22일 확진된 B(80)씨가 지난 26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확진자 모두 입원 치료 중 사망했으며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은 10.0%를 나타내고 있다. 위증증 환자는 2명, 치명률은 0.06%다. 강다혜기자

보건복지부 '2022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한라병원·서귀포의료원 '최하 등급'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408곳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똑같이 낙제 수준인 C등급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들 2곳 의료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408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시설과 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안전성, 효과성 등 5개 영역의 24개 지표다.

평가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은 가장 낮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C등급을 받은 곳은 한양대

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에 불과하다. 서귀포의료원도 125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두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C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를 통해 두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I. 보상금 신청 → II.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지급

신청인: 도·행정시·읍면동
심사: 제주4·3위원회 심의
심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제출: 제주도 신청인
청구인: 도·행정시·읍면동
제출: 제주도 청구인

※ 보상금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미발송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명	2,500명	2,500명	2,500명	2,500명	1,703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중앙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uu.go.kr>)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지연이 지급

보상금액

- 사망·행방불명자: 9천만원
- 수형인: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9천만원 이하)

수형 / 구금: 형사보상 1일최고액 x 수형(구금)일수 + 위자료(2천만원)
집행유예(금고 이상): 4.5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 후유장애인: 장애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5천만원~9천만원)

1~3 등급	4~8 등급	9~14 등급
9천만원	7.5천만원	5천만원

- 제외대상: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금 수령자 차감 지급

신청대상

- 생존 희생자: 본인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민법상 상속권자

보상금 청구권자 = 민법상 상속권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 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희생자 결정 통지서(도·행정시·읍면동 발급)
- 필요 시 추가서류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동의서(별지 서식)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1부)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금융기관 통장사본
- 필요 시 추가서류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0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0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0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